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5. 4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통지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정O우	60.8.22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통지	정당한 사유없이 2차 통지에도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: 2021.2.20. 2차 출석통지: 2021.2.24.	○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리 ○ 처분일(2021.4.12.)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전남 화순군 도곡면 호동길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1.5.4. ~ 2020.5.18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영선(Tel. 061-280-01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